

의안번호	2210714
의 퇴 인	조계원의원
회 답 일	2025. 6. 13.
추계번호	25C3117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3(화재등 방지 시설 및 공간의 설치 등)	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을 산불 등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유산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띄워진 산불방지 안전공간(나무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제거된 공간을 말한다)을 두어야 함(제2항)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는 자에게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3(화재등 방지 시설 및 공간의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□ 산불방지 안전공간 확보 의무화 및 지원 규정 마련(안 제14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로 하여금 지정문화유산을 산불 등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유산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띄워진 산불방지 안전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경우 나무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의 제거와 별도의 시설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- 위의 비용 발생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, 우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되므로 직접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인이나 민간단체가 대상인 경우에도 안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다만,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 설치를 포함할 수 있어, 이를 위한 비용이 지정문화유산 주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개소에 일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산불방지 안전공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